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5차 공고 - 학생수련지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학생수련지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기관	인원	지역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8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1명	부안

2. 분야 및 직무내용

분야	직무내용
학생수련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수련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수련활동 장비 및 시설관리○ 수련활동 자료 개발 및 운영○ 기타 학생 수련지도에 관한 업무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62조(시험의 공고)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2호)

4.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연령(2026년도 기준) : 18세 이상 ~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성별 제한 :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자격 요건

- (학생수련지도)

구분	임용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행 예정일)
<p>자격증 요건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p>	<p>다음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취득한 수상구조사 자격증 2.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p>*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및 부칙 제2조(2024.12.20.)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 개편으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만을 소지하고 임용된 사람은 2028년 12월 20일까지 특례시험을 거쳐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p>
<p>경력 요건</p>	<p>다음과 같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3호 중 하나 이상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수련활동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로 등록된 기관)에서의 학생수련지도 경력 <p>* 학생수련활동기관에서 근무하였더라도 담당업무가 학생수련지도 업무가 아닐 경우 경력 인정 불가</p>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주 40시간 근무 여부와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상 발행기관 관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포함 필수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이 모호할 경우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결정함**

직무기술서(학생수련지도 분야)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교육행정 8급 (지방일반임기제)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수련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수련활동 장비 및 시설관리 ○ 수련활동 자료 개발 및 운영 ○ 기타 학생수련지도에 관한 업무 	
필요역량	<p>(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p> <p>(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p> <p>(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p>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수련활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 내용 습득 ○ 학생수련과 관련된 민원 및 상황 대응 능력 ○ 수련활동 자료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마인드 ○ 수련원 내부 업무분장 수행에 따른 적극적인 태도 	
응시 요건	자격증 요건	<p>다음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취득한 수상구조사 자격증 2.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p><small>*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및 부칙 제2조(2024.12.20.)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 개편으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만을 소지하고 임용된 사람은 2028년 12월 20일까지 특례시험을 거쳐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small></p>
	경력 요건	<p>다음과 같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3호 중 하나 이상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수련활동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로 등록된 기관)에서의 학생수련지도 경력 <p><small>* 학생수련활동기관에서 근무하였다라도 담당업무가 학생수련지도 업무가 아닐 경우 경력 인정 불가</small></p>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각종 증빙자료의 경력, 자격 등에 대한 신뢰성 여부 등을 확인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 면접위원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0점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0점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점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점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우수·보통·미흡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우수·보통·미흡은 비공개 대상)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험 성적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6. 5. 19.(화) ~ 2026. 5. 21.(목)	2026. 5. 29.(금)	2026. 6. 1.(월)	2026. 6. 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장소 공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 공고(개별통지 하지 않음)

※ 시험일·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5. 19.(화) ~ 2026. 5. 21.(목) 09:00~18:00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응시원서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5층) 인사담당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우편제출(등기우편)

※ 제출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 등기우편 제출 시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등기 우편 발송 후 유선(063-239-3524) 또는 이메일(chlrudghks27@jbedu.kr)로 발송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제출 불가)

※ 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발송 주소》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봉투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응시원서 제출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순	제출서류	구분	서류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상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여 제출
2	응시원서	필수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 (방문접수) 응시원서 제출 시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3	이력서	필수	[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 사항 등은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4	자기소개서	필수	[별지 제4호 서식]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내외로 자유롭게 기술 ○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 포함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필수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같이 제출
7	경력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 필수 (증명서에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관련 경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회사가 폐업한 경우: ①, ②모두 제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②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주 40시간 근무 여부와 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증명서로 제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순	제출서류	구분	서류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 가능
9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필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제출 - 대조용 원본 지참, 확인 후 사본만 제출
10	주민등록초본	필수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1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별지 제6호 서식]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별지 제7호 서식]
13	위임장	해당자	[별지 제8호 서식]
14	임용자격요건 본인 확인서	필수	[별지 제9호 서식]
<p>※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p> <p>※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경력 인정이 가능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취득 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기관과의 계약서(보수액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입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관련 경력 산출이 가능할 경우에만 관련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p>			

9.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나. 보수수준

- 연봉: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고
교육행정 8급	62,096천원	44,296천원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포함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기타(유의) 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원본서류 반환요청 시 반환할 수 있으며,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063-239-3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기존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재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재접수 불요)
- 자. 본 시험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일·합격자발표일 변경 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차.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063-239-3524)

○ 담당직무 관련 사항

- (학생수련지도) 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부(063-580-172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응시분야	응시직급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7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0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13	위임장(해당자만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14	임용자격요건 본인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O” 표시

※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 (분야)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휴대전화								

응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 (분야)
성명	(한글)	(한자)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장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응시수수료 : 5,000원

[방문접수 시 - 현금납부]

[우편접수 시 - 우편서류와 함께 현금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직급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급) (분야)	성 명	
----------	--	----------	---	-----	--

나. 교육배경 (※ 블라인드 면접으로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비 고
학력 및 전공	00과	'00.00.00.	학사	
			석사	
			박사	

다. 경 력 (※ 관련분야 경력 모두 기재(경력증명서 첨부),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직위(급)	근무형태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법인 00과	'00.00.00.~'00.00.00. (0년 0월 0일)	사원	주40시간	○○업무
		00팀장	주40시간	

라. 자격증 및 수상실적

임용분야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기타 보유 자격 등			
수상 실적	수상내용	수상 연월일	수여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나. 교육배경 : 학교명 미기재, 전공분야, 학위취득일, 학위종류를 기재

다. 경력 등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경력증명서는 **관련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직위(급),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함**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직위(급) 기재 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⑥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라. 자격증 및 수상실적 :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수상 실적 기재**

□ 이력서 작성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양식 내에서 행추가와 행삭제가 가능 하며, 가급적 1~2장으로 작성 요망

자기소개서

< 작성요령 >

1. 내용 :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분량 : A4용지 3매 이내
3. 작성스타일 : (글자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4pt, (줄간격) 160%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 . .

채용분야 : () 분야 작성자 : ○ ○ ○ (서명)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1. 내용 : 응시 분야에 대한 소견,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2.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3. 작성스타일 : (글자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4pt, (줄간격) 160%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 . .

채용분야 : () 분야 작성자 : ○ ○ ○ (서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자격번호, 병역사항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완료할 때까지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완료할 때까지

라. 수집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3조

2026. .

성명 :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위임장

1.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임용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 학생수련지도 분야 -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 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구 분	자 격 요 건
경력요건	<p>인명구조요원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소지하고, 다음 1~3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p> <p>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p>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p>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필수 자격증 요건	<p>○인명구조요원 관련 자격증</p> <p>-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p> <p>-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p>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기간]의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응시자 성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2】

2026년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 적재 정용 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번호	
	본인필적 :	응시분야 (직 급)	
생년월일	※블라인드 면접으로 미기재	성명	

	평정요소	배점	위원평정점수
채 점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	
	합계	100	
심사위원 확인		성명 :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기준

- 위원 1인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8점미만(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위원 1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8점미만(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2.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면접평정점수

우수	보통	미흡
20점이하 ~ 14점이상	14점미만 ~ 8점이상	8점미만

- 소수점 이하 점수는 부여하지 않음